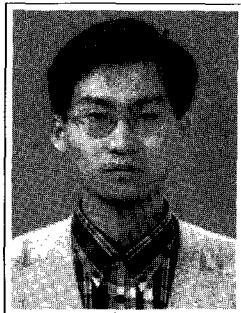


세계 비핵지대조약의 현황과 전망

고 한석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 연구원



일반적으로 '비핵 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 : NWFZ)'란 '조약 또는 협약에 의해 핵무기의 생산·보유·배치 및 실험 등을 영구적으로 금지한 지역'을 의미한다.

비핵 지대 설정의 일차적 목적은 핵비보유국들이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역내 국가들이 핵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비핵지대조약은 역내 국가들간에 상호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기존 핵보유국들로부터 해당 지역에 대하여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얻기 위한 체제이다. 따라서 비핵 지대 내의 해당 국가들은 조약의 가입 및 발효를 통하여 핵무기 보유에 의한 '핵억지력'과 함께 핵보유국들과 체결한 안보 조약에 따르는 '핵우산'의 보호도 포기하게 된다.

비핵지대조약 당사국들은 핵무기 보유와 핵우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핵보유국들로부터 자국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과 핵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 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 NSA)'을 해줄 것을 희망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핵지대조약은 핵보유국들이 해당 지역 핵비보유국들에 대하여 소극적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의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조약들의 경우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을 준수하겠다고 서명 및 발효함으로써 조약 자체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과는 달리, 비핵지대조약은

지역 내 관련 국가들과의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당 지역 비핵화에 대한 핵보유국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의 비핵지대조약들은 해당 지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별로 민감하지 않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핵보유국들의 이해 관계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 왔다.

한편 핵보유국들은 비핵 지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 처해 있다.

우선 비핵 지대의 세계적인 확대는 수평적 핵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와 자국의 핵무기 보유에 의한 우월성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적 비핵지대를 통합하여 전세계적인 비핵지대화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정당성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가 핵보유국들이 비핵지대조약 의정서에 선뜻 서명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비핵지대조약은 조약의 목적 및 적용 지역 등을 규정하는 각 조항과 함께 기존 핵보유국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 보장 부여와 지역 내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외 국가들의 참여 및 의무를 규정하는 의정서로 구성된다.

해당 역내 국가들의 조약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핵지대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이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안전 조치와 함께 독립된 기관에 의한 특별 사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약은 모든 조약 당사국이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의 안전 조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일 어느 일방의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영토 또는 기타 지역에서 조약 위반의 협의가 있어 특별 사찰을 요청할 경우, 각 조약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 협의 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혹은 기구(Agency)는 특별 사찰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핵지대조약은 IAEA의 안전 조치 체제와 역내 국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행하는 안전 조치 체제로 구성되는 ‘이중적 관리 체제(Double Control Mechanism)’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비핵 지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유엔군축연감(UN Disarmament Yearbook)>은 “①

비핵 지대화 제의는 해당 지역 국가 간에 자유롭게 결정한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② 비핵지대조약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③ 비핵지대조약은 비핵 지대 의무를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야 하며 ④ 핵보유국들은 해당 지역의 비핵화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⑤ 비핵지대는 해당 지역의 안보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안보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핵지대조약의 체결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 국가들의 합의 도출이다. 이러한 역내 합의는 주로 역내 국가들의 공동 관심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비핵 지대화를 촉진한 공동 관심 사안의 예를 들면, 중남미 지역의 쿠바 미사일 위기, 남태평양 지역의 프랑스 핵실험과 일본의 방사성 폐기 물 해양 투기 등이다.

둘째, 이와 같은 공동 합의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들이 비핵지대화와 관련한 공동 선언문(Agreed Declaration)을 작성 및 발표한다.

셋째, 핵보유국들과 협의를 거친 후, 유엔 총회에서 해당 지역의 비핵조약과 관련한 결의안(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좀 더 논의한 후, 최종 결의안을 채택한다.

넷째, 조약 당사국들간의 구체적인

조약 문안을 작성하고 유엔 총회에서 조약 문안을 소개(introduce)한 후, 당사국들과 핵보유국들이 참석한 조약 서명 회의를 개최하며, 마지막으로 조약 관련국들이 비준하면 발효하게 된다.

97년말 현재 비핵지대조약은 이미 체결된 조약들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중남미 지역, 남태평양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효 중이다. 유엔 총회에서는 이들 지역 이외에 중앙아시아·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과 함께 이미 체결된 비핵지대조약을 통합하는 남반구 비핵 지대화도 논의중이다.

주요 비핵 지대 현황

1. 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

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일명 Tlatelolco 조약)은 62년 소련이 쿠바를 핵미사일 기지화하려는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브라질 대표가 제17차 유엔 총회에서 제기함으로써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63년 멕시코의 아돌포 로페스 마테오스(Adolfo Lopez Mateos) 대통령에 의해 구체화된 이후 브라질·칠레·에콰도르 및 볼리비아 등 5개국 대통령이 중남미 비핵 지대 설립을 위한 다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

였다. 64년 11월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로 67년 2월 멕시코의 틀랄텔룰코(Tlatelolco)에서 체결되어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68년 4월 발효되었다. 97년 5월 말 현재 조약 해당국 가운데에서 마티니크를 제외한 33개국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서명국 가운데에서 쿠바를 제외한 32개국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은 조약 당사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나 미국의 영토와 그 관할하의 해양은 제외된다.

조약은 전문 및 본문 31조와 의정서 1,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서 1은 조약이 정한 적용 지역 내에 있는 영토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de jure or de facto)' 국제적 책임이 있는 국가들인 프랑스·네덜란드·영국·미국의 조약 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 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서 2는 핵보유국들에게 조약의 존중과 당사국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총 5조로 구성되어 있다.

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상태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인 '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 기구 (Agenc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OPANAL)'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OPANAL은 평화적 핵폭발의 사전 통보와 일방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특별 사찰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행하는 등 조약의 이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97년 5월 말 현재 의정서 1에는 해당 4개국 모두가 비준하였고, 의정서 2에는 핵보유 5개국이 모두 비준하였다. 단, 미국·영국·러시아 등은 만일 조약 당사국들이 핵보유국과 협력하여 자국을 침략하는 경우, 핵무기 불사용 의무를 재고할 수 있다는 유보 조항을 두고 있다.

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에서는 당사국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와 협력하여 평화적 목적의 핵장치를 폭발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핵폭발을 수행하려는 당사국 또는 협력국은 OPANAL과 IAEA에 핵폭발 수행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또한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상기 권한을 평화적 목적으로의 핵장치 폭발과 관련하여 단독 혹은 제3국과 협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미국은 제2의정서에 서명하면서 발표한 선언을 통해 "현재 기술로는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 장치에 대한 제조 기술과 핵무기 제조 기술 간에 구별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핵폭발 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수행된 프랑스의 빈번한 핵실험과 태평양에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려는 일본의 시도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된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South Pacific Nuclear-Free Zone Treaty, 일명 Rarotonga 조약)은 85년 쿠군도의 라로통가(Rarotonga)에서 체결되어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8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86년 12월 발효되었다. 97년 5월 말 현재 조약 해당국 가운데에서 마샬군도·마크로네시아·팔라위를 제외한 13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서명 국가들 가운데에서 통가를 제외한 12개국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은 동쪽으로 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의 경계선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서해안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인류 비거주 지역에 대한 비핵지대조약인 남극조약의 적용 지역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키리바티의 영해에 해당하는 북반구의 일부를 포함하여 대체로 적도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은 전문 및 본문 16조와 4개의 부록 및 의정서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서 1은 조약의 적용 지역 내에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영국·미국의 조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 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서 2는 핵보유국들에 대해 조

약의 존중과 당사국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총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서 3은 핵보유국들에 의한 역내 핵실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 4조로 구성되어 있다.

96년 3월 피지에서 미국·영국·프랑스가 모든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영국이 97년 9월 16일자로 비준하였다.

의정서 2, 3에만 해당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조약 발효 당시에 비준하였다.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은 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과 달리 핵폭발 장치에 대한 금지 규정 이외에 방사능 물질의 해양 투기도 금지하고 있으며,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은 핵무기를 탑재한 외국의 함정·항공기의 역내 방문·통과에 대해서는 당사국에 자유 재량권을 주고 있다.

단, 뉴질랜드는 86년의 미국 Buchanan호의 기항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하여 모든 항공기 또는 선박이 핵장치 또는 핵무기를 적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3. 아프리카비핵지대화조약

아프리카비핵지대화조약(African Nuclear Weapon-Free Zone Treaty, 일명 Pelindaba 조약)은 60년에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자, 아프리카 국가들이 같은해 8개국 공동 명의로 아프리카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결의문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면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Treaty, 일명 Pelindaba 조약)은 60년에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자, 아프리카 국가들이 같은해 8개국 공동 명의로 아프리카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결의문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면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91년 남아공화국의 핵무기 폐기 및 핵비확산조약(NPT) 가입으로 비핵지대 설정 분위기가 고조되어, 비핵지대조약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최종 조약 문안이 95년 6월 남아공화국의 핵무기 개발 기지였던 펠린다바(Pelindaba)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완료되었으며, 96년 4월 11일 카이로에서 체결되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다.

97년 5월 현재 조약 해당 지역에서 마다가스카르를 제외한 52개국이 서명하였으나, 아직 발효 조건(28개국 비준)이 충족되지 못해 조약은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프리카비핵지대화조약의 적용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연맹(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 OAU) 회원국 및 그에 속한 도서국, 아프리카 일부로서 아프리카연맹이 인정하는 모든 도서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영해와 군도, 영공 및 해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마우리티우스(Mauritius)간 Chagos 군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어 본 조약 부

록에는 영유권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석을 달아 놓고 있다.

이 조약의 기탁처는 아프리카연맹이며, 조약은 전문 및 22조와 4개의 부록 그리고 의정서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서 1은 핵보유 5개국을 대상으로, 본 조약 당사국 및 역내의 비아프리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영토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서 2는 핵보유 5개국을 대상으로, 어떠한 핵폭발 장치를 실험하거나 이를 지원하거나 조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 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서 3은 조약의 적용 지역 내에 영토를 책임지고 있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대상으로, 본 조약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 7조로 구성되어 있다.

아프리카비핵화지대조약은 당사국이 어떤 종류의 핵폭발 장치를 확보·개발·제조 및 비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핵폭발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핵폭발 관련 연구도 금지하고 있으며, 상기 행위와 관련한 원조를 구하거나 받거나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역내 해양 및 지상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남미핵무기금지조약과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과 마찬가지로, 조약의 이행을 검증하는 수단으로서 당사국들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 IAEA 전면 안전 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과 같이 아프리카비핵지대화조약은 당사국이 핵비보유국에게 핵물질 등을 수출할 경우 IAEA 전면 안전 조치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핵보유국으로 수출할 경우 적용할 IAEA 안전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이 방사능 물질의 해양 투기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아프리카비핵지대화조약은 전 아프리카 지역 해양 및 지상에서 방사능 물질 투기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를 탑재한 외국의 함정·항공기의 역내 방문·통과에 대해서는 당사국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으며, 당사국은 역내에 있는 어떤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도 재래식 무기 또는 기타 수단으로 무장 공격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원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프리카비핵화지대조약은 당사국이 보유한 모든 핵실험 장치의 제조 장치를 파기하거나 민수용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IAEA로부터 이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한 검

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준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아프리카원자력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Nuclear Energy : AFCONE)’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South 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Treaty, 일명 Bangkok 조약)은 71년 11월 캄라룸푸르에서 ‘동남아시아 평화 자유 중립 지대 선언(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 ZOPFAN)’이 채택된 이후, 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6차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ASEAN) 각료 회의시 동남아시아비핵 지대 설치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적용 지역은 본 조약이 발효되는 국가의 영토와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s : EEZ)을 포함한다.

이 조약은 95년 12월 15일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97년 5월 현재 적용 대상 국가 10개국이 모두 서명하고 있으며 97년 3월 28일 캄보디아가 7번째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조약이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전문 및 22조와 1개의 부록 및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서는 핵보유 5개국에 대해 조약을 준수하고, 조약 당사국 및 조약의 적용 지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의 적용 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당사국은 핵무기의 개발·제조·획득·소유·실험·사용·배치 또는 통제권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은 또한 상기의 사항에 관련된 다른 국가의 활동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본 조약을 발효시킨 후 18개월 이내에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이 핵비보유국에게 핵물질 등을 수출할 경우 IAEA 전면 안전 조치를 조건으로 하고, 핵무기 보유국에게 수출할 경우 적용 가능한 안전 조치를 조건으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당사국에게 원자력사고 시 초기통보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비핵지대화조약과 같이 전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 및 다른 폐기물을 투기 또는 처분할 수 없으나, IAEA의 기준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육지 처분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선박 등의 기항·통과 등에 대한 권한은 당사국의 결정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약 준수를 감독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위원회(Commission for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를 설립하며, 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실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97년 5월 말 현재 의정서에

(표) 비핵 지대 관련 조약 비교표

(1997년 5월 현재)

항 목	조 약	중 남 미 핵무기금지조약	남 태 평 양 비핵지대조약	아프리카 비핵지대화조약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	한 반 도 비핵화공동선언
일	서 명	67. 2. 14	85. 8. 6	96. 4. 11	95. 12. 15	91. 12. 31
반	발 효	68. 4. 22	86. 12. 11	-	97. 3. 28	92. 2. 19
사	당 사 국	33	16	52	10	남·북한
항	기 한	무기한	무기한	무기한	무기한	-
조약 적용 지역 및 범위		영해, 영공 및 주권 행사 지역	영토, 영공, 내수, 영해, 다도해역, 심해저	영토, 영공, 내수, 영해, 다도해역, 심해저, 대륙붕, EEZ	영토, 영공, 내수, 영해, 다도해, 심해저, 대륙붕, EEZ	
핵무기의 정의		핵무기만	핵무기+기타 핵폭발 장치	핵무기+기타 핵폭발 장치	핵무기만	
금 지 화 물 동	연 구			γ		
	개 발			γ	γ	
	실 험	γ PNEs* 허용	γ	γ	γ	γ
	제 조	γ	γ	γ	γ	γ
	생 산	γ				γ
	획 드	γ	γ	γ	γ	γ
	접 수	γ				γ
	배 치		γ	γ	γ	
	배 비 저 정	γ	γ	γ	γ	γ
	비 축		γ	γ	γ	
	설 치	γ	γ	γ	γ	
	장 착		γ	γ	γ	
	부 착		γ	γ	γ	
	수 송	γ	γ	γ	γ	
	소 유	γ	γ	γ	γ	γ
	통 제 권		γ		γ	γ
	사 용	γ		γ	γ	γ
핵물질 투기			γ	γ	γ	
재처리· 농축 시설 보유						γ

*PNEs : Peaceful Nuclear Explosions

서명한 핵보유국들이 전무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동남아시아비핵지대

조약이 베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함으로써 유엔 해양법 (Law of Sea Convention)에 근거한 자유로운 영

해 통과권(transit right)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약의 서명을 주저하고 있다.

(표) 계속

조약 항 목	중 남 미 핵무기금지조약	남 태 평양 비핵지대조약	아프리카 비핵지대회조약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기타 의무			핵무기 제조 능력 공표 및 기존 개발 핵무기, 제조 시설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 관련 평가를 전 당사국에 통보 ○ 핵관련 사고를 IAEA 및 전 당사국에 조기 통보 	
평화적 이용 보증	✓	✓	✓	✓	✓
핵무기 탑재 항공기·함선의 통과(항) 기착(항) 허용 여부	미규정 (당사국 결정, 목시적 양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 자유 원칙 존중 ○ 당사국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 자유 원칙 존중 ○ 당사국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 상호 사찰 	
통제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 ○ 의무 위반시 총회 소집, IAEA 및 유엔 통보 ○ OPANAL과 IAEA 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 ○ NPT 3조 2항상의 공급 조건 수락 ○ Consultative Committee에 의한 특별 사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체결 ○ NPT 3조 2항상의 공급 조건 수락 ○ African Commission on Nuclear Energy 수립 ○ 당사국 회의 격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체결 ○ NPT 3조 2항상의 공급 조건 수락 ○ 이행기구로 Commission for the SEA NWZF 설치 	
분쟁 해결	평화적 해결 원칙			유엔 현장상의 분쟁 해결 절차 적용	
유보 금지	✓	✓	✓	✓ *의정서에는 유보 가능	
역외 국가 개방	중남미 국가에 국한			전 역외 국가에 개방 *의정서는 5개 핵보유국에만 개방	
부 속 의 정 서	역내 국가에 대한 핵보유국의 NSA	(제2의정서) 5개 핵보유국 가입	(제2의정서) 5개 핵보유국 가입	(제1의정서) 미·영·불·중 서명	(단일 의정서 형식)
	핵실험 금지	미규정-제1의정서상 의무에 구속	(제3의정서) 5개 핵보유국 가입	(제2의정서) 미·영·불·중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역외 국가에 개방 ○ 의정서 당사국의 NSA 의무
	역내 영토 보유 혹은 핵보유국의 의무 수락	(제1의정서) 미·영·불·네덜란드 가입	(제1의정서) 5개 핵보유국 가입	(제3의정서) 영국·스페인의 조약 의무 수락(양국 미서명)	

5. 비핵지대조약별 비교

현재 발효중이거나 채택된 비핵지대조약들은 기본적인 개념 및 내용에 있어 큰 차이는 없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91년 12월 31일 채택되고 92년 2월에 발효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조약'과 같은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을 다른 비핵지대조약과 비교해 보면 <표>와 같다.

기타 비핵 지대 논의 현황

이미 체결 또는 발효된 비핵지대조약 이외에 중앙아시아·중동·남아시아 지역 등의 비핵 지대화가 논의 중에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 비핵 지대화는 역내 국가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랄해 (Aral Sea)의 방사성 폐기물 오염이 계기가 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97년 2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알마티 선언 (Almaty Declaration)'을 통해, 아랄해의 방사성 폐기물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 보호를 위한 종합 사업을 개발하고, 역내 국가들의 원자력 관련 기술 및 물질의 외부 유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중앙아시아의 비핵 지대

화 설립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였다.

이후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5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이들은 공동 합의문 발표를 통해, 역내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비핵지대조약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며 5대 핵보유국과 기타 국가들에게 중앙아시아 비핵 지대 설립 발의에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에 중앙아시아 비핵 지대 논의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중동 비핵 지대화는 74년 이란과 이집트에 의해 공동으로 제기된 이후 유엔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74년 최초로 제안된 중동 비핵 지대 결의안은 유엔 총회가 모든 역내 국가들에게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핵무기를 생산 또는 획득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의사를 즉시 선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 핵시설을 공격함에 따라 중동 지역의 비핵화 문제 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하나 역내 관련 국가들의 상이 한 정치적 이해 관계 및 안보 인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남아시아 비핵 지대화는 74년 제29차 유엔 총회에서 파키스탄에 의해 최초로 총회 의제에 포함되었다.

당시 결의안에는 ① 아시아의 특정 지역의 비핵 지대화에 있어서 해당 지역 국가가 주도하여야 하고 ② 남아시아 지역의 비핵 지대화 개념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며 ③ 관련국들간에 협의 개시를 권유하고 ④ 사무총장에 대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남아시아 비핵 지대에 대하여 유엔 총회에서 토의되고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맺는말

지역적 차원의 핵비확산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비핵지대조약은 인접 국가들간에 서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상호 연대'를 바탕으로 하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핵보유국들이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보증'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안보 강화에 기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원의 '협력'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 국가들간에 핵무기 비보유라는 '연대'에 대한 신뢰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내 핵비보유국들간의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인 비핵 지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현안'에 대한 공동의 이해 관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체결된 비핵지대조약들을 살펴보면, 역내 국가들간에 지역의 비핵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현안'이 발생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서로 비핵화를 추구하고자하는 이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지역의 비핵 지대화가 성사되어 왔다.

이는 그 동안 중남미 지역의 쿠바 위기, 남태평양 지역의 프랑스 핵실험과 일본의 폐기물 투기, 아프리카 지역의 선진국들에 의한 폐기물 투기 우려와 함께 남아공의 핵시설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분위기 등의 '현안'을 바탕으로 역내 비핵화를 위하여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온 사례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의 이해 관계 형성과 핵보유국들의 비핵화 '인정'을 통하여 특정 지역의 비핵 지대화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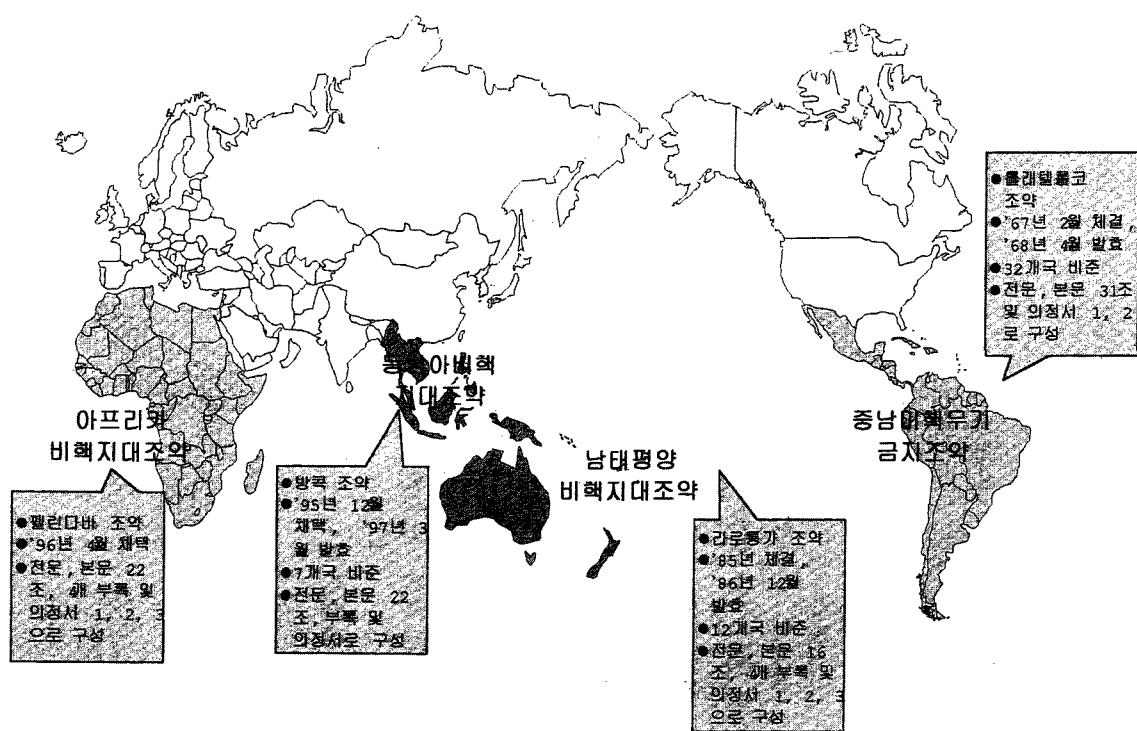
현재 일부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비핵 지대를 설치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관계, 러시아와 중국 등 핵

보유국의 존재, 일본과 러시아·중국 그리고 한국간의 영토 문제, 과거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경험 등 역내 국가간에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 조성 및 평화와 안정의 증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원자력 분야의 '현안'들을 중심으로 관련국들간 공동의 이해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림) 세계의 비핵 지대 현황(97년 5월말 현재)